

 검사·진단기관

■ **안전보건공단**

구 분	담당부서	관할지역	연락처
서울광역본부	광역사업부	서울, 강원도	T. 02-6711-2852 02-6711-2855 F. 02-6711-2859
인천광역본부	광역사업부	인천, 경기도	T. 032-510-0531 032-510-0532 F. 032-581-8381
부산광역본부	광역사업부	부산, 울산, 경상남도	T. 051-520-0530 051-520-0529 F. 051-520-0539
광주광역본부	안전인증부	광주, 전라남도, 전라북도, 제주도	T. 062-949-8782 062-949-8783 F. 062-949-8768
대구광역본부	광역사업부	대구, 경상북도	T. 053-609-0524 053-609-0527 F. 053-421-8629
대전세종광역 본부	광역사업부	대전, 세종, 충청남도, 충청북도	T. 042-620-5614 042-620-5616 F. 042-632-4787

■ **한국환경공단**

구 분	연락처
대표 연락처	T. 032-590-4991

■ **한국가스안전공사**

구 분	연락처
대표 연락처	T. 043-750-1236,1239

**유해화학물질
취급시설**
검사 및 안전진단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 

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(북정동)

2020-중대산업사고예방실-45

**안전은
관리입니다**

**유해화학물질
취급시설**
검사 및 안전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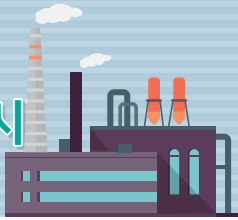


 **고용노동부**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 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
검사(설치·정기·수시
및 안전진단)

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5 및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.

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-10호 <17. 12. 28.>

검사의 종류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검사 기관에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.

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및 항목

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.

환경부 고시 제2019-157호 <19. 8. 31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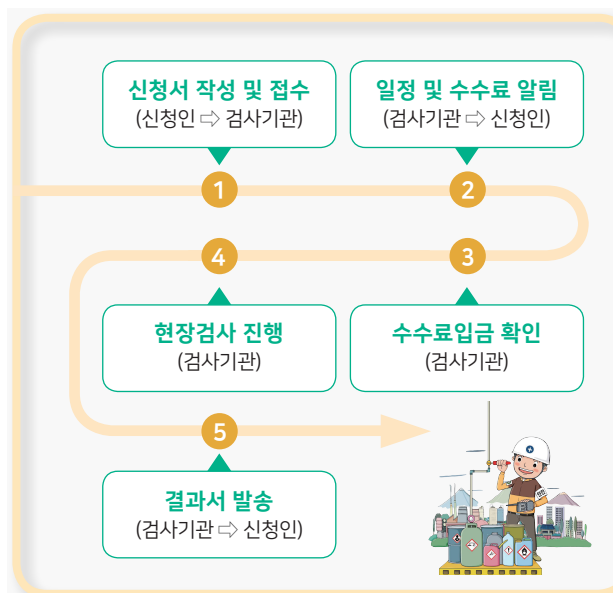
검사항목,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「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-4~12호 <19. 9. 2.>

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/주기

구분	시기/주기
설치검사	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
정기 검사	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	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 마다 (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)
수시 검사	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
	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
안전 진단	설치/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	장외 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
	결과 없는 경우 4년 마다
	고위험도 4년 마다
	중위험도 8년 마다
	저위험도 12년 마다

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



검사 및 안전진단수수료의 산정

- 수수료 부과근거: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
- 검사·안전진단 수수료는 제조사용, 실내저장보관, 실외저장보관, 지하저장보관,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, 배관이송설비 등 시행규칙 [별표5]에서 규정한 시설 별로 구분하고, 각 시설별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- 세부내용은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고시 제2018-23호 <18. 2. 9.>

※ 검사·진단 수수료: 관할 광역본부 별 전산신청 후 지정된 가상 계좌로 입금

검사 및 안전진단 적용 기준

구분	기준	검사표 (적/부 판정기준)
기존 시설	'14. 12. 31. 이전 설치, 운영 및 착공 시설	환경부 고시 제2019-157호 (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 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)을 적용하여 판정
신규 시설	'15. 1. 1. 이후 착공 시설	

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 웹사이트*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

*웹사이트 주소: <http://kosha.or.kr/cheminsp>

※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시 문의사항은 각 관할 광역본부로 문의
※ 신청양식: 환경부 고시 제2019-157호 <19. 8. 31.> 별지서식